

제348회 서초구의회(임시회)
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[오지환 의원 발의(의안번호 제477호)]



2026. 3.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

(재정건설위원회)

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477호		
의안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발의자	오지환의원	제출연월일	2026. 3. 13.
위원회	재정건설위원회	전문위원	김민희

I

제안내용

1. 제안이유

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식관리지원 체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해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·영양관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및 목적 수정 (안 제1조)
- 나. ‘취약계층’의 정의 신설 및 사업 대상 범위 확대 (안 제2조)
- 다. 설치 및 운영, 사무의 위탁 상위법령 근거 추가 (안 제4조,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[붙임]

- 「식품위생법」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예산편성 불필요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라. 입법예고 : 2026. 3. 17. ~ 2026. 3. 22.(총5일), 의견 없음

II

검토의견

1. 개정조례안의 제출 경위

- 2008. 3. 21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(법률 제8943호) 제21조가 제정되면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초구는 2013. 6. 1.부터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.

<사업 추진개요>

- 사업명 :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(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)
- 위탁기간 : 2024.01.01.~2026.12.31.(3년)
- 인력현황 : 총10명(센터장1, 팀장1, 팀원8)
- 위탁사무 : 등급별 위생·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, 대상별 교육,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
- 민간위탁금액 : 550,000천원 (국비20%, 시비40%, 구비40%)

<2025년도 기준 어린이급식소 등록·관리 현황>

(단위: 개소)

구분	총 기관수	일반회원 (등록관리 대상)		기본회원		총 회원수	
		등록수	인원수	등록수	인원수	등록수	인원수
어린이집	158	145	5,100	13	1,528	158	6,628
유치원	9	6	393	3	462	9	855
아동복지시설	17	17	380	-	-	17	380
총계	184	168	5,873	16	1,990	184	7,863

-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. 12. 기준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의 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12,995개소이며, 이 중 78.8%에 해당하는 10,238개소가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, 위생과 영양 관리가 취약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음.
-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춰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. 7. 28.부터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360호, 2021. 7. 27. 제정)이 시행 중에 있음.
- 특히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데, 이 때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2025년도 서초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49개소로 이 중 노인복지시설이 23개소, 장애인복지시설이 26개소이며, 2026. 3. 10.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 관련 조례를 “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”로 제·개정하여 운영 중인 자치구는 17개 자치구(강남, 강동, 강서, 광진, 금천, 마포, 성동,

성북, 영등포, 중랑, 강북, 노원, 도봉, 구로, 양천, 송파, 은평)인 것으로 조사되었음.

<2025년도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현황>

(단위: 개소)

총계	노인복지시설(23)				장애인복지시설(26)		
	노인의료 복지시설	노인여가 복지시설	재가노인 복지시설	노인보호 전문기관	장애인 거주시설	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	장애인직업 재활시설
49	5	6	10	2	11	11	4
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2. 주요 개정사항
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사회복지시설급식법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·군·구(228개)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완료하고자 함[『’25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국비지원 수요조사』(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-244, 2024. 1. 15. 및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-1536, 2024. 1. 16.)].

- 이에 우리 구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목표에 따라 금년에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설치를 완료하여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위생·영양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것임.

3. 조문별 검토내용

■ 제명 변경

- 조례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하고자 함.

■ 조문 개정(안 제1조, 제4조, 제7조)

-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, 이에 따라 종전 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 → “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”로 확대 및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.
- “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”로 확대 및 통합 운영됨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개정하고, 안 제7조의 사무위탁의 범위에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를 추가하였음.

■ 조문 신설(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5조제3호)

- “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”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에 “취약계층”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아울러 안 제5조제3호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음.

4. 조례 개정에 따른 추진계획

- 현재 우리 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간(2024. 1. 1.~2026. 12. 31.) 서초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,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 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으로 실시할 예정임. 다만,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재위탁 시에는 위탁내용 및 사무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82호, 2022. 11. 25. 발령·시행)에 따른 업무 범위¹⁾ 이외에도 어린이의 성장기, 연령층 등을 고려한 맞

1) 제3조(업무범위)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,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
2.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·보급
3. 어린이, 조리원, 원장·교사,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
4.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5.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,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
2. 노인·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·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·보급

출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.

-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, 이용자별 영양관리 지도(영양관리카드 관리), 대상별 교육(이용자, 조리원, 종사자, 시설장), 정보제공(식단제공, 식생활정보 제공, 소식지) 등의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<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급식소 관련 특화사업>

지역(자치구)	프로그램 명칭	주요 내용
서울 송파구	영양 가득 원데이클래스	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요리실습
경기 의왕시	의왕미식회/나 길들이기	조리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어르신 맞춤형 식단 가이드 제공
경기 안산시	찾아가는 실버 영양교실	어르신들의 저작(씹는)능력에 맞춘 단계별 식단 교육 및 인지 활동 결합 프로그램
충남 당진시	안심급식소 인증제	위생영양 수준이 우수한 시설을 '안심급식소'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및 홍보 지원
전남 나주시	협력형 급식 지원 모델	소규모 시설 간 협업을 통해 식단을 공동 대응하는 체계 구축

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4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, 상담 및 정보 제공
5.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, 영양관리카드 작성·관리, 영양상담
6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·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시설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.
- 따라서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및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전임.
-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함께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 다만,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2027년에는 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때 위탁내용 및 사무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, 나아가 국·시비 및 자체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